

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.
 다) 하수와 소관

- 집중호우시 아직도 오수로 인한 침수지역이 있는 바, 하수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절기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.

라) 공원녹지와 소관

- 가로수 식재가 부실하여 가로수 고사율이 높은 바, 고사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.
- 녹지대 가설물 점용허가등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녹지대 관리가 부실한 바, 관련공무원들의 교육계획등 재반 녹지대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녹지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.

나. 건의사항

- 1) 재개발 및 재건축업무가 관련공무원들의 기피업무가 되고 있는 바,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원 및 업무조정등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- 2) 주차차고지증명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사료되는 바,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급부서에 건의하기 바람.

다. 처리의견

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'95. 1. 31.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,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, 수립,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'95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심사보고서

1994. 12. 22.
 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회의회(정기회) 제8차위원회('94.12.22.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최 영 명
- 가. 제출이유
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매각 — 7필지

소 재 지	지 목	지 적(㎡)	매 각 시기	매 각 사유
계		571중 486	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
신공덕동 21-10	대	35중 12	상 반 기	항제20호
" 130-87	대	20	"	"
" 130-106	대	380	"	"
" 130-116	도로	46	"	"
" 133-74	대	4	"	"
" 138-27	대	63중 1	"	"
" 145	대	23	"	"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건재)

-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임.
- 매각은 신공덕동 21-10등 총7필지로 면적은 571㎡중 486㎡임.
- 재산의 현황을 보면 공덕동 로타리에서 만리리와 용마루길내에 위치한 주택개량 지역내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현재 점유사용 및 일부 나대지 상태이며 추후 아파트 건립 예정지임.
- 동 매각의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김문태 위원): 작은 토지를 남겨두고 매각하여 남는 곳의 이용 가치는?
- 답변(재무과장 최영명): 관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 관리할 것임.
- 질의(유남렬 위원): 신공덕동 재개발조합이 2곳으로 경합중인가?
- 답변(재무과장 최영명): 현재까지 인가

된 조합은 없음.

- 질의(이봉형 위원): 매각예정가가 시가보다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?
- 답변(재무과장 최영명): 공시지가를 기준치로 책정했기 때문이며 향후 매각 시에는 재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가 조정됨.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사항: 없음

'95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3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1994.11.22.

제출자: 마포구청장

- 제안이유: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.
- 주요골자

1) 매각 — 7필지

소재지	지목	지적(㎡)	매각시기	매각사유
계		571중 486		
신공덕동 21-10	대	35중 12	상반기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" 130-87	대	20	상반기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" 130-106	대	280	상반기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" 130-116	도로	46	상반기	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
소 재 지	지 목	지 적(m ²)	매 각 시기	매 각 사유
" 133-74	대	4	상 반 기	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" 138-27	대	63중 1	상 반 기	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" 145	대	23	상 반 기	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

'95공유재산관리계획

('95년도관리계획총괄표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처	계	토 지	7	486	665,820				7	486	665,820	
		건 물										
매	각	토 지	7	486	665,820				7	486	665,820	
		건 물										
분	잉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교	환으로처분	토 지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
무상상용 및 대부허가	계											
	토 지											
	건 물											
	기 타											

'95관리계획(매각)재산 내용

1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지 목	지적(m ²)	매수신청자주소 및 성명	비 고
신공덕동 12-10외6필지(별첨 토지조서참조)	대,도로	486	신공덕지구 재개발조합	

2. 재산의 현황

○ 위 치 : 공덕동 로타리에서 만리로와

용마루길내에 위치한 주택개량 재개발지

역내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임.

○ 형태별이용상태 : 전 점유사용 및 일부
나대지 상태이며, 추후 아파트 건립 예
정지임.

3. 매각사유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
20호 규정에 의거 매각